

# 고령사회 노인주거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in Advanced Age Society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교 수 신 화 경\*\*

상명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연구 원 이 준 민\*\*\*

Division of Human Environmental Science, Sangmyung Univ.

Prof : Shin, Hwa-Kyoung

Institute of Natural Science, Sangmyung Univ.

Research member : Lee, Joon-Min

---

### <Abstract>

By population graying, elderly residing problem is risen by social problem. Specially, because residing is occupying many parts in psychological sentimentalize stability of elderly senescence, it is misgovernment that suitable countermeasure is pressing hereupon with governmental interest so that elderly age may can inhabit to suitable residing spac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used content analysis method about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laying stress on data of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connection literature, virtue research etc.. and research result is as following ; First, as elderly residing connection equipment is permitted by common people subject operation in government burden gradually in van abroad including our country, supply of elderly equipment is spreading. Second, support about elderly dependent is introducing house priority supply system to financial favors benefit and income tax exemption, aged parents supporter being increasing. Third, through reconstruction and so on of house, real elderly's ashes are developing by support policy. Also, is administering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by total service that can support elderly aging in place.

---

▲주요어(Key Words) : 고령사회(advanced age society), 노인주거지원정책(residing support policy for the elderly), 노인주택(elderly house), 재가복지(opulence welfare)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8년 현재 우리나라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추계치)이 10.3%로(유엔 통계, 2007) 2005년 9.1%에 비해 1.2% 증가한 것으로 빠른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예측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각 나라에서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현실점에서 우리나라도 이를 대비한 다양한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노인의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는 생활 주기상 어떠한 시기보다 강하며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노인주거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노년기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활동영역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

\* 이 논문은 2008년도 상명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 저 자 : 신화경 (E-mail : hkshinpro@paran.com)

\*\*\* 교신저자 : 이준민 (E-mail : ljmljy@paran.com)

비율이 증가되고 주거가 노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노인이 적절한 주거공간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함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노인관련 복지정책은 선 가정 후 사회보장에 바탕을 두어 노인을 부양하고 보살피는 일을 주로 가족이 맡아오므로 인해 노인주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가족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되어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노인주거에 대한 관심은 더욱 필요하다. 현재는 노인복지의 주 대상을 저소득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층에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제외한 노인계층에게는 거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오경석 등, 1996). 노인층의 주거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초생활비용으로 임대료 등이 가계지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최저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데 버겁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노인주거지원정책의 개발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노인에게 있어 안정된 주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노인주거지원정책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인계층의 복지를 향상함과 동시에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는 진리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가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방안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김영태,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 노인주거복지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선진외국의 노인주거지원 정책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주거지원 정책방향을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고령사회 노인주거지원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문헌은 학위논문, 노인주거관련 학회지(건축학회논문집, 주거학회논문집 등) 및 보고서(건설교통부 자료, 대한주택공사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료 등)에서 추출한 선행연구와 통계청의 인구통계자료, 보건복지부의 노인주거복지시설자료 등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노인주거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노인주거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선진외국의 노인주거지원정책들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1) 노인동거가구가 가장 일반적인 동거형태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노인동거가구의 비율은 상당부분 감소하였다.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1998년 53.2%에서 2004년 43.5%로 감소한 반면, 노인 단독가구는 1998년 30.9%에서 2004년 37.9%로 급증하였다(통계청, 2005).

둘째, 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노인주거지원정책을 비교하기 위해 국가는 일본, 독일, 영국, 미국, 싱가포르, 스웨덴으로 한정하여 조사한다.

셋째, 각 나라의 노인주거지원 내용으로 노인주택, 주택 개조, 재가복지 서비스,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및 주거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3. 조사대상 국가의 노인인구 특성

세계적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건강한 노인의 증가 이외에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수발지원이 필요한 노인도 함께 증가할 것을 예측하므로 이에 따른 노인의 욕구가 점차 다양해지고 양적, 질적으로도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상회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각 나라의 정부 역시 노인의 요구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조사대상 국가의 고령화 속도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스웨덴, 독일, 영국, 일본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며 미국의 경우 2013년에 싱가포르 2016년,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예견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되는 속도는 독일과 영국, 미국, 스웨덴이 4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일본은 24년으로 빠른 진행을 보이고 이미 200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8년, 싱가폴은 11년으로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초고령화 소요기간은 이보다 더 짧은 8년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소요기간이 30년도 채 안되어 전 세계에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 II. 노인주거지원정책의 시대별 변화

### 1.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지원정책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구체적인 노인세대에 대한 주거관련 정책이 없었으나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시설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아울러 자녀와 부모와의 동거를 권장하기 위한 3대 동거 주택정책을 추진하여 1988년 서울 상계동에 동거형과 인거형의 3세대 주택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주택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향후 매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후 확대 공급되지 못하였다(박신영 등, 2006). 또한 경로우대공제의 소득세법이 신설되면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자에게는 연령에 따라 일정금액(65세 이상은 연 100만원, 70세 이상은 연 150만원)을 공제해 주었다. 1990년대에는 이렇게 노인인구 증가에

&lt;표 1&gt; 각 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

구 분	고령화 도달연도			고령화 소요기간(년)	
	7%	14%	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5	24	11
독 일	1932	1972	2012	40	40
영 국	1929	1976	2020	47	45
미 국	1942	2013	2028	71	15
싱가폴	2005	2016	2024	11	8
스웨덴	1887	1972	2012	85	40

자료: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2003), 통계청(2005), 유엔통계(2007)

따른 노인문제가 대두되면서 노인주거서비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고 노인주거시설은 무료시설, 실비 및 유료 양로시설, 실비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등 이외에 노인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실버타운과 유료양로원 등 다양한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1993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이 강화되고 다양한 시설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1997년 민간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 실비양로,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 유료노인복지주택)이 등장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의 시설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유료(실비)노인복지주택은 임대 외에 분양도 허용하게 되었다.

1999년 규제완화를 통한 시설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되면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비용 수납 신고제가 폐지되고, 양로 시설,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자에 부과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규정하게 되었다. 2002년 국민 주택기금의 수요자 용자지원항목 중 연 5.5%로 지원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0.5% 인하해주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1순위에 해당되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1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김영태, 2005). 2003년에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관리 및 공급에 대하여 주택법 관련 규정 준수 조항이 생겨나게 되었다. 노인복지주택은 경제적·신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민간부문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이용 및 건설기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취득등록세 50% 감면, 자치단체에 따라 재산세 감면혜택도 부여하고 있다(장영희, 2007).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법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공급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주거시설의 입소현황(2)을 보면 알 수 있다. 2005

년에 실비노인복지주택의 대체 수단으로 100만호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일부(860호)를 고령자 전용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2008년 입주 예정에 있다. 2005년에는 노인주거 및 의료보호시설 설치 및 폐지에 대한 권한이 시, 군, 구청장에게 이양되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요구되고 있다(박신영 등, 2006). 또한 건교부 주거복지지원팀에서 노인가구의 주택개조 기준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는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박신영, 2007). 그러나 현재 노인가구의 주거수준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개보수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우리나라 주택 수요가 신규 수요에 치우쳐 있고, 현재의 주거상태에 익숙해져서 변화를 꺼리는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선진외국의 노인주거지원정책

일본은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노인세대를 위한 공영주택 건설을 시작으로 1989년 골드플랜을 통해 주거지원정책의 방향을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고령자 보건복지 차원에서 홈헬퍼를 양성하는 계획이 추진되었고, 2001년에는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06년에는 주생활 기본법을 제정하여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해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74년 노인홈에 관한 법이 공포되고 노인들의 수발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1995년에는 수발보험이 도입되었다. 또한 1999년 고령자 친화형 주거형식을 개발하고 기존의 시설들도 노인 친화적으로 정비하여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1956년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노인주택을 짓는 민간업체에 인

### 2) 고령자 주거복지시설 입소현황

구 분	무료 실비		유료		계			
	양로	양로	양로	주택	계	양로	주택	합계
시설수	145	132	74	15	89	351	15	366
입소율	79.0	82.4	53.7	45.9	50.2	70.6	45.9	65.1

자료 : 보건복지부(2007), www.mw.go.kr

센터브를 주고 1980년대 이후에는 노인주거복지가 정부에서 지방자치로 이양되면서 노인의 기존시설 보호 중심에서 탈시설화 정책으로 전환 운영되고 있다.

영국과 스웨덴 역시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노인주택 공급과 더불어 시설중심의 보호정책에서 노인의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 외에 싱가포르를 노인을 배려하는 무장애 디자인 설비를 설치하고, 스웨덴은 노인주거 복지시설 공급을 통해 '정상화'의

개념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 외국의 최근 노인주거지원정책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999년 유엔에서는 "세계 고령자의 해"로 선포하면서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를 위하여'라는 기본원칙 하에 모든 세대가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의 조성 과 세대 간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박준영 등, 2007). 특히 영국의 지역보건(Community care), 독일의 고령자 친화형 주택단지 모델, 스웨덴의 일상의 자신의 집에서 살기(Normalization), 미국의 주거개념을 강화한 고령자 주택,

<표 2> 선진외국의 노인주거지원정책

국 가	법·제도 특징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3년 노인복지법 제정</li> <li>- 1964년 노인세대를 위한 공영주택</li> <li>- 1978년 고령자와 동거 시 할증용자혜택</li> <li>- 1989 골드플랜 :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여 주거지원정책의 방향을 지역사회보호서비스로 전환</li> <li>- 1990년 시니어 주택</li> <li>- 2001년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li> </ul>
독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4년 노인홈에 관한 법 공포</li> <li>- 1986년 주거문제상담소 설치</li> <li>- 1978년 노인들의 수발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1995년 수발보험 도입</li> <li>- 1999년 고령자 친화형 주택 개발 육성</li> </ul>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1년 주택법 제정으로 민간에 의한 노인주택 공급</li> <li>- 1972년 민간임대주택 거주 노인 임차료 보조</li> <li>- 1980년대 고령자의 시설중심 보호정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자택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서비스 아파트를 공급</li> <li>- 1994년 고령자 주거지원정책이 '일상을 자신의 집에서 살기'라는 장애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평범한 환경 속에서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li> </ul>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6년 주택법 개정으로 고령자용 공공주택 공급</li> <li>- 1965년 노인복지법 제정</li> <li>- 1978년 고령자용 집합주거단지 지원제도 시행</li> <li>- 현재 자가 노인주택 신축시 최대 100% 융자</li> <li>- 현재 노인전용임대주택 또는 조합주택 설치 공급시 최장 40년간 저리융자</li> </ul>
싱가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8년 고령자 자문위원단 구성</li> <li>- 1991년 고령자 주거복지시설 마련</li> <li>- 1998년 가족 및 고령자 회의 국가위원회 승격</li> <li>- 현재 원룸임대주택 단지 개선사업,</li> <li>- 현재 무장애 디자인 개조 원룸형 임대주택 개선사업</li> <li>- 노인을 배려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별개의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녀와 친구들과 인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거택을 촉진시킴</li> <li>- 스튜디오 아파트는 중앙공제기금을 이용해 30년 임대 조건으로 판매되는 특수주거로 노인을 위한 거주성을 고려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li> </ul>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7년 노인홈법 제정</li> <li>- 1964년부터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시설을 주로 공급</li> <li>- 1985년 이후 고령자주거지원정책의 방향이 '정상화'로 전환</li> <li>- 2005년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특별주택 거주 노인</li> <li>- 그 외 노인들은 재가서비스 받으며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도록 함</li> </ul>

자료 : 김근홍(2001), 독일의 노인주택정책, 한국사회복지, 제5집.  
 김용택(2001), 일본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1호.  
 이영환(2001), 영국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1호.  
 최성재(2001), 미국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1호.  
 박신영(2006), 선진국 노인주택정책과 시사점, 주택도시 제82호, pp17-32.  
 박신영 등(2006),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건교부  
 이상식 등(2006), 고령사회와 인구대책 및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희 등, 주거복지론(2007), 교문사.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Gold plan) 등은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주거생활(aging in place)을 영위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선진외국의 노인주거지원정책의 전개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각국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여건과 역사적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공통적으로 고령화 현상에 직면하여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바탕으로 노인주거지원정책을 해결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대책은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로 인식되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는 한편 정책의 주체도 공공에서 민간과의 협력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이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시설'중심의 고령자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령자가 오랫동안 거주해 왔던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주된 목표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 더불어 시설중심 서비스에서 재가복지 및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행되고 소수의 저소득층 노인 중심에서 일반노인을 위한 고령자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이러한 고령자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하였으며 현재 영국과 일본 등에서도 이를 주된 정책방향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 III. 각국의 노인주거지원정책의 세부항목별 비교

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노인주거지원정책을 노인주택에 대한 지원,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개조에 대한 지원,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주거비 보조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 1. 노인주택에 대한 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주택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정의된 노인주택 또는 노인전용주택의 개념을 노인의 생활특성을 배려하여 건축된 주택, 노인들이 모여 사는 주택,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적 서비스가 필요한 주택이라는 관점에서 노인주택 건축과 관련된 지원정책을 살펴보았다(박재간, 1997).

일본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스톡을 계획하고 그룹주거를 추진하여 재택 보조 장소로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웨덴 역시 시설중심의 연금주택, 양로원에서 독립된 주거와 각종 생활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간호주택이 새로운 노인주택으로 공급되고 있다. 영국의 노인보호주택은 공영체가 대부분이고 관리인에 의한 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합하

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집합주택과 비슷하지만, 규모면에 있어 소규모 집단주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싱가포르의 고령자 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 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령자 주택유형으로 주거기능이 강화된 시설이므로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생활이 가능하고 고령자들이 장기적으로 독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와 융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외국의 노인주택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고령자의 주거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양로 및 요양시설을 거쳐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노인 전용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이 2005년도에 처음 실시되면서 앞으로의 고령자 주거복지시설로서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장영희, 2007). 노인복지주택이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나 민간부문에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외국의 노인주택에 대한 지원이 양로시설에서 노인주택 공급으로의 방향이 전환되는 특성이 있고 다양한 노인주택 유형이 개발되어 노인의 건강과 경제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제공되고 있어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

#### 2. 노인을 위한 주택 개조에 대한 지원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물리적·사회적·심리적 면에서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다양해지고 더욱 부각되었다. 이로써 현대 사회에 대하여보다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노인전용 주택 제공과는 별도로 시설주의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정점에 도달하면서(스웨덴, 미국, 영국 등) 누구나 자신이 속해있는 환경에서 평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이 확산되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살기를 원한다는 기본적인 욕구를 존중하여 가능하면 많은 노인을 자신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거조절을 활용하자는 것인데 주거조절이란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노후의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물품이나 장치 마련, 주택 내 시설 설치 및 구조 변경, 주택 내 가구나 실내 디자인의 조정을 의미한다(남순동, 2001). 각국의 노인을 위한 주택 개조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3) normalization이란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덴마크정신장애자협회 회장인 뱅크 밋켈센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장애인의 생활을 가능한 한 통상의 생활 상태에 접근하게 하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1950년대 말 스웨덴 정신장애자 협회 사무국장 니르제 등에 의하여 체계화되어 1967년 스웨덴의 장애자 복지정책에 활용되었다. 그 후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1970년대부터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박신영, 2006).

&lt;표 3&gt; 노인주택개조에 대한 지원

구 분	내 용
한 국	- 노인주택의 개조기준 마련(2006) - 화장실 개조, 도배 및 장판 교체 - 주택 내 안전장치 및 이동 편의시설 설치 - 욕실 내 미끄럼방지 타일, 좌식샤워시설 설치 - 주택을 구입, 수리, 개조 또는 임대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저리용자
일 본	- 고령자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개호보험법 - 주택 개조비 한도액 : 20만엔 1회 원칙 -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에도 의무화 - 핸드레일 설치, 실내단차 해소,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 재료 변경, 미닫이문으로의 교체, 양식 변기 등의 교체 등 - 주택리폼헬퍼제도 : 리폼 도우미 파견
독 일	- 문턱 제거, 출입구 확장, 창문 낮추기 - 지지대, 손잡이, 승강기 설치 - 샤워실 단차 해소 - 연간 임대료수입의 11%를 주택 및 건물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영 국	- 난방개조 : 문, 우편투입구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외풍을 차단하기 위한 보강이나 절연공사 지원 - 계단, 욕실 재정비 - 물탱크, 파이프공사 등에 주택개량보조금 지원 - 공용공간 수리보조금 지원 - 휠체어 사용이 가능 하도록 문 확장
미 국	- 'Home' investment partnership 프로그램 : 주택 개조, 수리에 이용되는 자금 융자 지원
싱가폴	- 원룸 임대주택단지 개선사업 - 단위주호를 고령자에 적합한 무장애공간으로 개조 - UD설비 도입 - 미끄럼방지 타일, 수세식 변기로 교체, 레버형 수도꼭지 설치 - 안전바, 경보 시스템 등 설치 - 문턱 제거, 알루미늄 소재의 격자창, 레버형 문 손잡이, 전층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엘리베이터 내부의 손잡이 설치, 단지 내 복도에 손잡이 및 경사로 설치 등
스웨덴	- 휠체어 사용공간의 확보, 문턱 없애기 등 지자체 주택공사가 노인을 위한 주택개조 추진 - 이동에 장애가 있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조 : 1층에 고령자를 위한 주택 확보, 엘리베이터 설치

자료 : 김근홍(2001), 독일의 노인주택정책, 한국사회복지, 제5집.

김용택(2001), 일본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1호.

이영환(2001), 영국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1호.

최성재(2001), 미국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1호.

박신영(2006), 선진국 노인주택정책과 시사점, 주택도시 제82호, pp17-32.

박신영 등(2006),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건교부

이상식 등(2006), 고령사회와 인구대책 및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희(2007), 고령화시대 노인주거복지 정책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노인주택의 개조기준 마련을 통해 화장실 개조, 도배 및 장판 교체, 주택 내 안전장치 및 이동 편의시설 설치, 욕실 내 미끄럼방지타일, 좌식샤워시설 설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등에서도 노인주택 내 실내 단차를 없애고, 손잡이 설치, 욕실 재정비, 휠체어 사용공간의 확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주택개조, 수리에 이용되는 자금이 융자 지원되고, 일본은 주택 개조에 관한 리폼 도우미가 파견됨으로써 노인을 위한 주택 개조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노인세대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주로 욕실과 현관에 대한 개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조 방식으로는 실내 단차를 없애고 미끄럼방지 타일, 안전바, 레버형 수도꼭지 설치 등 설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은 노인세대 주택 개조 시 필요한 현금과 현물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등은 현물지원 위주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듯 각 국의 노인을 위한 주택의 개조 지원은 탈 시설화 차원에서도 비용과 노인의 만족도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전반적인 주택의 질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가능하므로 노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주택정책 투자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5년 말 노인가구 주택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장기준으로 「노인가구 주택개조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 주거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령자주거 지원법(안)).

<표 4>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

구 분	내 용
한 국	- 가정봉사원 파견 : 가사지원, 개인활동, 정서지원 서비스, 노인자립생활 상담서비스, 장애인노인 수발자 상담 및 교육, 무의탁 노인 결연사업 -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 생활지도 및 심신의 기능회복 지원 서비스, 급식 및 목욕 서비스, 여가활동 서비스, 교육 서비스, 노인가족상담 교육 - 가정봉사원 양성 교육사업 : 양성, 보수교육
일 본	- 데이서비스, 방문간호제도 실시 - 재택개호지원 센터 설립(1990) - 긴급통보시스템 설치
독 일	- 노인친화주거설비(특수침대, 욕조 등) 지원 - 재가치료 서비스, 수발 서비스 - 시간제,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영 국	- 일상생활기술 제공 - 주택관련 단순작업을 원조할 수 있는 인력 소개 - 지역정보, 전화보호 서비스
미 국	- 집합주택 원조법 : 노인이 살던 지역에 거주하며 식사, 가사 등의 서비스를 받음
싱가폴	- SPHERE : 단지 내 지역커뮤니티를 강화하여 세대 간 차이를 줄임
스웨덴	- 세탁, 장보기, 청소, 의료, 응급호출, 운송, 제설 작업, 야간이나 주말동안의 시설 입소 등 지원 : 연금생활자의 약 10%가 지원받음 - 지역사회 가정 내에서 사회서비스와 의료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용됨 - 서비스 아파트 : 재가서비스 담당자가 순회방문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자료 : 김근홍(2001), 독일의 노인주택정책, 한국사회복지, 제5집.  
 김용택(2001), 일본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1호.  
 이영환(2001), 영국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1호.  
 최성재(2001), 미국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1호.  
 박신영(2006), 선진국 노인주택정책과 시사점, 주택도시 제82호, pp17-32.  
 박신영 등(2006),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건교부  
 이상식 등(2006), 고령사회와 인구대책 및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희(2007), 고령화시대 노인주거복지 정책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그러나 고령화 대책 중 하나로 주거지원 종합대책이 개조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기간에 제도화되다 보니 미흡한 실정에서 주택 내부를 개조할 때 구조 변경 공사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여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추가비용소요로 인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또한 선진외국과 비교했을 때 노인주거의 수준 개선을 위한 신축주택 구입은 물론 기존주택의 증·개축에 따른 소요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인주거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주거 소비와 소득수준을 연결한 주거실태조사와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노인을 위한 주거비 보조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정부의 금융지원이 요구된다.

### 3.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

현대 복지국가들은 주거시설공급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장과 개선을 선택하고 있다. 더욱이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인세대의 aging in place에

대한 지원으로 재가서비스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한 재가복지 서비스 대부분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인하여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주간·단기 보호 등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있다.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가정봉사원이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식사 목욕 병원안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주간 및 단기 보호 사업은 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낮 동안 또는 수일간 시설에 입소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가복지서비스는 가족 대신 노인보호의 상당부분을 보완·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점차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재가복지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 중에 스웨덴이 가장 먼저 이러한 정책을 제도화했으며, 영국과 미국도 상당히 정책된 상태이며 일본은 1990년대 이후부터 노인주거정책이 재가복지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표 4> 참조). 독일, 영국, 미국, 스웨덴 등에서는 노인이 살던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식사, 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이외에도 지역 내 긴급 경보, 재가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표 5>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구 분	내 용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주택기금 : 부양가족에 용자금 할증, 저리의 금융지원혜택, 소득세 감면 등</li> <li>- 주택자금 우대지원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주에 전세 보증금 대출시 500만원 할증, 개인주택 신축, 매입, 개량자금 용자 시 1000만원 더 용자</li> <li>- 직계존속부양자 주택 우선 공급제도</li> <li>- 직계존속 노인 1인당 부양가족공제,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노인 1인당 경로우대공제</li> <li>- 부모와 자녀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li> <li>- 3대 동거가족의 주택 신축자금, 전세자금에 각각의 할증 용자를 받음</li> </ul>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가족에 특별할증용자, 상속시 증여세를 비과세로 함</li> <li>- 부모자식간 용자상환시 상환기간 연장</li> <li>- 노부모와 동거 또는 인거할 경우 분양당첨비율우대, 효도대출</li> </ul>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부양가족은 세대원수에 따라 임대료 보조(중위소득이 80%를 넘지 않아야 함)</li> </ul>
싱가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프 프로젝트 : 60세 이상의 1인 이상의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구에 우선권 부여</li> <li>- 재판매 아파트 신청가구의 월수입 상한선을 높임 ; 확대가족이 중앙공제기금을 받아 재판매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함</li> </ul>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양휴가법 ; 중병노인부양가족에 최대 60일간의 유급휴가를 줌</li> <li>- 간호수당, 부양수당</li> <li>- 에텔개혁 ; 부양자에 대한 지원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함</li> </ul>

자료 : 김근홍(2001), 독일의 노인주택정책, 한국사회복지, 제5집.  
 김용택(2001), 일본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1호.  
 이영환(2001), 영국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1호.  
 최성재(2001), 미국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1호.  
 박신영(2006), 선진국 노인주택정책과 시사점, 주택도시 제82호, pp17-32.  
 박신영 등(2006), 고령자 주거지원 증장기 계획 수립 연구, 건교부  
 이상식 등(2006), 고령사회와 인구대책 및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희(2007), 고령화시대 노인주거복지 정책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단지 내 지역커뮤니티를 강화하여 세대 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SPHERE (Students, Singapore pools & HDB Enriching and Reaching out to the Elderly)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청소년이 노인을 돌보는 세대 간 통합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1982년에 실시된 미국의 지역사회 선택 프로그램인 COP(Community Options Program)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해 요양시설의 수요 증가 요인을 제거하고 노인 의료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독자적인 가족관계에 기대해서 동거하는 가족의 개호를 바탕으로 여기에 복지서비스를 추가하고 있으나,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일찍이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단독 세대의 노인이 압도적이므로 가족의 수단에 의한 개호는 기대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재가복지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도 의료중심에서 지역채택복지 서비스를 중시하는 자원배분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듯 노인을 배려한 정책 중 재가복지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시설 수용의 복지에서 재가복지로의 확충을 목표로 노인의 재가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외국에서는 제한된 복지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모든 활동 주체들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

스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과거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노인의 부양은 당연히 가족이 책임을 졌으나 점차 자녀수의 감소와 여성의 취업 및 사회활동의 참여로 노인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노인 단독세대 또는 노인 부부세대만의 거주세대가 급증하였다. 또한 고령자 스스로도 자녀와의 별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4)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노인의 자조능력과 가족의 부양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주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비슷한 부양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노인부양

4) 노후부양에 대한 연령대별 차이를 보면 65세 이상 응답자를 제외하고는 동거든 별거든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비율보다는 독립생활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다. 심지어는 65세 이상 응답자조차 스스로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이 43.2%로 나타났으며, 별거부양을 선택한 비율이 20.2%로 나타남으로써 자녀와 함께 동거하겠다는 비율은 32.3%에 지나지 않는다(정경희, 2003),



가족에 대해 용자금 할증, 저리의 금융지원과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노부모와 동거 또는 인거할 경우 분양당첨비용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노인부양가족은 세대원수에 따라 임대료를 보조받으며, 싱가포르의 재판매 아파트 신청가구의 월수입 상한선을 높이는 대신 노인부양가족이 중앙공제기금을 받아 재판매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웨덴의 경우는 중병이 있는 노인부양가족에게 최대 60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부양휴가법이 있으며 간호수당, 부양수당이 지급되며, 에텔 개혁을 통해 부양자에 대한 지원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선진외국과 다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노인 부양의 대부분이 공적부양방법 보다는 사적부양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한 수발비중이 가족구성원 중심의 사적 부양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아들이나 며느리에 의한 수발비중이 다른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다

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거의 전적으로 사적부양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공적 장기요양보장체계가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적지원에 대한 제도들은 노인을 모시지 않는 자녀로 하여금 노인을 모시도록 하는 유인책이 된다고 하기보다 이미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해주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박종성, 2006). 또한 이러한 제도는 노인들이 자녀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통의 노인부양에 대한 정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웨덴의 부양휴가법이나 부양 수당 등과 같은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5. 주거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

우리사회는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주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주택자금 대부분을 공공부분

<표 6> 노인을 위한 주거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

구 분	내 용
한 국	- 노인 저소득 임차가구에 월 임대료 보조, 임대보증금 용자 - 주거급여 지원 - 65세 이상의 1가구 1주택자 대상 역모기지제도
일 본	- 복지형 공공임대주택 : 중,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 보조 - 슬럼 재개발 철거민들의 재정착시 보조금 지원 - 장애인 5년 이상 거주시 : 장애인 편의시설보조금 지원
독 일	- 임대주택의 집세 인상이 3년내 최고 20%까지만 허용
영 국	- 공영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 할인 - 기타의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대료 보조 - 금전급부 : 노인의 소득수준에 의함 - 주택보조금 : 노후한 주택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재정착보조금 : 재정착 주택 구입시 신청 가능
미 국	- 노인자가주택 신축시 건축자금 최대 100% 용자 - 노인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 임대용노인주택 입주시 임대료의 일부 보조 - 주택바우처사업 : 가구소득의 30%까지만 임대료를 부담하고 차액은 정부에서 보조 - 역저당 용자
싱가폴	- 노인들이 공공주택 입차시 : 추가 주택보조금이나 은퇴기금 등 중앙공제기금을 받아서 소요비용을 충당함
스웨덴	- 집합주택의 신규건설 및 개량사업에 정부에 의한 주택건설자금의 대부 - 연금생활가구의 25%가 총 주거비의 90% 보조 - 노인의 자산 조사를 통해 주택보조가 제공

자료 : 김근홍(2001), 독일의 노인주택정책, 한국사회복지, 제5집.  
 김용택(2001), 일본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1호.  
 이영환(2001), 영국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1호.  
 최성재(2001), 미국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1호.  
 박신영(2006), 선진국 노인주택정책과 시사점, 주택도시 제82호, pp17-32.  
 박신영 등(2006),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건교부  
 이상식 등(2006), 고령사회와 인구대책 및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희(2007), 고령화시대 노인주거복지 정책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의 주택건설에 사용함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주택에 상대적으로 자금 지원이 소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임구원, 2003). 이에 노인인구의 주거생활 보장을 위한 주거비 보조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 주택을 구입, 수리, 개조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저리 융자해주거나 저소득층의 노인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등 주거비 보조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보조, 할인 등의 주거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있으며, 독일은 3년 내 임대주택의 집세 인상율을 최고 2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노인들이 공공주택을 임차시 추가 비용을 중앙공제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스웨덴의 경우는 연금생활가구의 25%가 주거비 보조를 받고 있다(<표 6> 참조).

또한 역모기지를 통해 일본은 노인의 이주를 지원하며, 미국은 저소득과 중간소득 노인 가정을 위한 주택 건설 및 재생을 위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노인의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재산세를 20% 감면해주는 등 지원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주거상담센터를 설치해 주거상담에 대한 지원까지도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역모기지제도는 사망 시까지 거주를 보장함으로써 주거불안에 대한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노인 가구에게 역모기지 제도를 통해 매달 균등 분할 방식의 연금이 지급되며 이에 반해 일본은 역모기지를 통해 이주를 지원하고 있어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노인주택 건설 및 공급에 있어서 고령자 전용주택, 3세대 동거 주택 등에 조세지원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인 단독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IV. 결론 및 제언

그동안 우리나라는 놀라운 경제성장과 더불어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주택문제는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노인의 소득수준 향상, 주택욕구의 다양화, 노인시설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 정책 대응이 없다면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최저한의 삶의 보장을 위한 노인주거지원정책이 노인복지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들을 위한 주거환경의 다양한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1980년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점차 노인주거관련시설이 정부 주체에서 민간주체 운영으로 허용되면서 노인시설의 공급이 확산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노인시설의 공급에서 다양한 노인주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공급주체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원활한 노인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시켜 개인이나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외국에서는 노인주거지원을 위한 주택공급형태가 양로시설 공급 → 노인주택 공급 → 노인의 재가복지를 위한 주거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 에 대한 단순한 주거지원에서 탈피하여 노인의 사회통합증진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선진외국들의 *aging in place, normalization* 등의 개념과 의미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측면의 노인주거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윈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최근 들어 노인단독세대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재가복지차원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시설 설치 등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있으며 노인의 노후 소득, 건강, 주거 여가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즉 노인세대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주로 욕실과 현관 등 실내의 단차를 없애고 미끄럼방지 타일, 안전바, 레버형 수도꼭지를 설치하는 등 주택의 개조 기준을 마련하여 점차 실질적인 노인의 재가지원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역시 노인이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적으로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토털 서비스로의 노인주거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재가노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으로 주거이동성을 최소화하고 의료 및 생활서비스로 인해 노인을 위한 건강, 주택, 사회보호서비스 등을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부양가족에 대한 융자금 할증, 다소 저리의 금융지원혜택, 소득세 감면과 더불어 최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서 직계존속 부양자에게 주택우선 공급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노인부모와의 동거와 근거에 대한 특별할증 용자제도가 있으며 특히 신축, 재건축, 증개축 등의 경우 증여세액이 경감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 부양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부모 부양가족 및 노인세대 가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폭을 보다 더 넓히고, 주택 우선 공급의 혜택을 줌으로써 노인이

심리적으로 가족과 함께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고령화의 급진전, 노인가구의 증대, 노인문제의 국가부담 증대 등을 고려해볼 때 향후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특히 노인주거문제는 노인의 복지 및 노인생활안정에 필수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위한 종합적인 노인주거지원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노인주거지원정책 비교 이외에 노인주거지원정책의 강도 및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 연구가 후속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200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자주거지원 중장기계획수립 연구(2006). 건설교통부. 고령자주거지원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2006). 건설교통부. 김근홍(2001). 독일의 노인주택정책. **한국사회복지**, 5, pp.119-141. 김영태(2005). 노인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택도시**, 82, pp.7-16. 김용택(2001). 일본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 연구, 21, pp.149-210. 남순동(2001). **한국노인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인가구의 자립생활증진을 위한 주택개조기준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2005). 건설교통부 박신영(2006). 선진국 노인주택정책과 시사점. **주택도시**, 82, pp.17-32. 박신영(2007). 고령자 주거지원과 정책 방향. **경기논단**, 9(1), pp.21-40 박신영 · 김은혜 · 김정인 · 김태일 · 이경락 · 임미숙 · 지은영 (2006).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건교부. 박신영 · 최은희(2003). 실비노인복지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주택공사. 박종성(2006).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호서대 석사학위논문. 박준영 · 권혁삼 · 권성순(2007).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4), pp.83-92.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송태경(2003). **고령화 사회의 노인주거정책에 관한 연구**, 노인주거 정책의 특성과 유관집단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국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병선(2006). **고령사회의 노인주거 복지과제**. 한국학술정보. UN 통계. 이상식(2006). 고령사회와 인구대책 및 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환(2001). 영국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1, pp.5-54. 이재근(2006). **노인주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이현정(2006). 싱가포르의 노인주거복지정책 및 노인주택 특성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11), pp.135-142. 이현정(2006). 일본의 고령자 주거지원정책 및 고령자용 주택 특성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12), pp.11-18 임구원(2003). 실버복지를 위한 노인주택정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8(1), pp.145-177. 장영희(2007). 고령화시대 노인주거복지 정책방안.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저출산 고령화 대응 국제정책 포럼 발표자료(2006).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정경희(2003). 가족의 노인부양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조인숙 · 박남희 · 신화경(2007). Aging in Place를 위한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 pp.95-102. 최성재(2001). 미국의 노인주택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1, pp.211-258. 통계청. www.nso.go.kr 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위원회(2007). **주거복지론**. 교문사.

□ 접수일 : 2008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08년 06월 08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10월 14일